

의안번호	2212128
의 퇴 인	조경태의원
회 답 일	2025. 9. 26.
추 계 번호	25B4386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8조의2 (명예감시원)	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·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를 하게 할 수 있음 (제1항)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8조의2 (명예감시원)	• 제3호: －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행정관청¹⁾이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·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
1)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- 개정안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은 명예감시원의 자격, 위촉방법,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²⁾하고 있고, 향후 행정관청별 명예감시원 위촉 규모, 활동수당 지급기준, 운영비 등의 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·직원 등을 수산물 명예감시원³⁾으로 위촉하여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
 - － 「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」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-2호)에서는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정하여 1일 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, 1인당 연 5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⁴⁾하고 있으며,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관련 예산 현황은 [표1]과 같음

[표 1]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내역사업)	사업내용	2025	2026(안)
수산물품질관리 (3045-301)		393	393
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	명예감시원 활동수당	369	369
	명예감시원 교재, 포상	24	24

자료: 해양수산부, 「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(Ⅱ-1)」

2) 안 제58조의2(명예감시원)

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, 위촉방법,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3)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

제104조(농수산물 명예감시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·직원 등을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·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.

4) 「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」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-2호)

제10조(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)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 참석비와 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정하여 1일 50,000원 범위에서 지급하며, 1인당 연 5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